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구 미 시

##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피해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 2. 감면대상자

가. 확진자 및 격리자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된 자 중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나.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를 둔 개인

다. 착한임대인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제외

라. 중소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3. 세목별 감면내용

#### 가. 주민세 균등분

- 1) 확진자 및 격리자가 포함된 세대에 부과되는 2020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 2)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2020년 개인사업장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한다.

#### 나. 재산세

- 1) 확진자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주택에 한하여 2020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소유 주택을 포함한다.
- 2) (착한임대인) ①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과세 기준일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 포함하여 건축물의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라 계산한 2020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면적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재산세액이 인하한 임대료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재산세액이 인하한 임대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합계액을 한도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2.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임대차 계약인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인 경우

## 다. 자동차세

- 1) 확진자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2020년 1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2) 최초로 감면된 자동차 1대에 한하며, 확진자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소유 자동차 및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도 포함한다.

## 4. 감면방법 : 직권 또는 신청

## 5. 기타사항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6. 참고사항

가. 감면 추계액 : 불 임

나.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다.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마. 기 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기준 통보

(도 세정담당관-1587, 2020. 2. 6.)

#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감면액 발생

### 2. 비용추계의 전제

-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감면액은 코로나 19 발생동향 집계
-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750백만원 감면은 '19년 부과건 참고
- 중소기업 자동차세 70백만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실적 감안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19년 부과 평균액과 신청실적 감안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 연도         |          | 1차년도<br>(2020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구분         |          |                 |      |      |      |      |         |
| 세입         | 감면예상액(a) | 931,700         |      |      |      |      | 931,700 |
| 세출         | 소 계(b)   |                 |      |      |      |      |         |
| 총 비용 (a-b) |          | 931,700         |      |      |      |      | 931,700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 연도  |  | 1차년도<br>(2020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구분  |  |                 |      |      |      |      |         |
| 국 비 |  |                 |      |      |      |      |         |
| 도 비 |  |                 |      |      |      |      |         |
| 시 비 |  | 931,700         |      |      |      |      | 931,700 |
| 민 간 |  |                 |      |      |      |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 931,700         |      |      |      |      | 931,700 |

### 5. 부대의견

- 시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것으로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세원을 확충

### 6. 작성자 : 세정과 재산세담당 남윤지(480-6863)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감면대상 및 감면율

| 구 분        |       |       | 감 면 대 상 자 |       |       |       |      | 비고 |
|------------|-------|-------|-----------|-------|-------|-------|------|----|
|            |       |       | 확 진 자     | 격 리 자 | 개인사업자 | 착한임대인 | 중소기업 |    |
| 주민세        | 균등분   | 개 인   | 100%      | 100%  |       |       |      |    |
|            |       | 개인사업자 |           |       | 100%  |       |      |    |
| 재산세        | 주 택   |       | 100%      |       |       |       |      |    |
|            | 건 축 물 |       |           |       |       | 100%  |      |    |
| 자동차세 (1기분) |       |       | 100%      |       |       |       | 100% |    |

### 2. 감면 예상액

(단위 : 천원)

| 세 목     | 대 상 자     | 감 면 액                        |         | 비고 |
|---------|-----------|------------------------------|---------|----|
|         |           | 산 출 내 역                      | 세 액     |    |
|         | 합 계       |                              | 931,700 |    |
| 주 민 세   | 소 계       |                              | 770,200 |    |
|         | · 확 진 자   | · 70건 × 10천원 = 700천원         | 700     |    |
|         | · 격 리 자   | · 1,950건 × 10천원 = 19,500천원   | 19,500  |    |
|         | · 개인사업자   | · 15,000건 × 50천원 = 750,000천원 | 750,000 |    |
|         |           |                              |         |    |
| 재 산 세   | 소 계       |                              | 77,500  |    |
|         | · 확 진 자   | · 70건 × 250천원 = 17,500천원     | 17,500  |    |
|         | · 착한임대인   | · 300건 × 200천원 = 60,000천원    | 60,000  |    |
| 자 동 차 세 | 소 계       |                              | 84,000  |    |
|         | · 확 진 자   | · 70건 × 200천원 = 14,000천원     | 14,000  |    |
|         | · 중 소 기 업 | · 350건 × 200천원 = 70,000천원    | 70,000  |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壊)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기준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20.2.5.)호와 관련입니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군에서는 지방세관계법 상의 지원방안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지방세 지원실적을 매주 목요일 12:00기준(금주부터 적용) 당일 14:00까지 [붙임2]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세정담당관실 김혜경 주무관 '온나라메일(gb\_yurielfy83@mail.go.kr)' 전송

- 붙임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방세 지원 기준 1부.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방세 지원 실적(서식) 1부. 끝.

## 경 상 북 도 지 사

수신자 포항시장(재정관리과장), 경주시장(세정과장), 김천시장(세정과장), 경주시장(징수과장), 안동시장(세정과장), 구미시장(세정과장), 구미시장(징수과장), 영주시장(세무과장), 영천시장(세정과장), 상주시장(세정과장), 문경시장(세무과장), 경산시장(세무과장), 경산시장(징수과장), 의성군수(재무과장), 군위군수(재무과장), 청송군수(재무과장), 영양군수(재무과장), 영덕군수(재무과장), 청도군수(재무과장), 고령군수(재무과장), 성주군수(재무과장), 칠곡군수(세무과장), 예천군수(재무과장), 봉화군수(재정과장), 울진군수(재무과장), 울릉군수(재무과장)

|                   |                                                   |                     |                        |
|-------------------|---------------------------------------------------|---------------------|------------------------|
| 주무관               | 세정총괄팀장                                            | 세정담당관               | 2020. 2. 6.            |
| 협조자               | 주무관                                               |                     |                        |
| 시행                | 세정담당관-1587 (2020. 2. 6.)                          | 접수                  | 세정과-1858 (2020. 2. 6.) |
| 우 36759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                     |                        |
| 전화번호 054-880-2211 | 팩스번호 054-880-2190                                 | / yurielfy@korea.kr | / 대국민 공개               |

"두근두근 우리아기, 콩닥콩닥 희망경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메르스 당시('15년) 지방세 지원(경북) : 지방소득세 기한연장(33백만원)

## □ 주요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 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예) 부동산 매매계약(1.30)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 연장 가능(6개월(최대1년))

-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또는 압류 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105)

▪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4)

\*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 (「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 □ 시군 조치사항

-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
- 피해자의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 적극 추진

| 소 관 부 서     |       | 세 정 과               |
|-------------|-------|---------------------|
| 입<br>안<br>자 | 과 장   | 변 동 석               |
|             | 담 당   | 임 영 권               |
|             | 담 당 자 | 남 윤 지<br>(480-6863) |